

# (렌탈료채권)양도담보계약서

이 양도담보계약서(이하 “이 계약서”)는 2022년 2월 18일자로 아래 당사자들간에 체결되었다.

양도담보설정자

주식회사 페어  
서울

양도담보권자

주식회사 링크스톤파트너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4, 5, 6, 8, 17, 19층(여의도동, 오투타워)

주식회사 페어 (이하 “차주” 또는 “양도담보설정자”), 주식회사 링크스톤파트너스(이하 “대주” 또는 “양도담보권자”)는 2022년 2월 18일자로 원금 총액 금 일십억원 (₩1,000,000,000)의 대출약정(이하 “대출약정”이라 하며, 그 변경, 추가 및 대체된 내용을 포함)을 체결하였다.

한편, 양도담보설정자는 대출약정에 따라 차주가 양도담보권자에게 부담하는 제반 채무 일체(“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설정자가 렌탈료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기재 업체와의 렌탈계약 등에 따른 렌탈료채권을 대출약정서상 대주인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양도하고자 한다.

이에 이 계약의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 계약을 체결한다

## 제 1 조 정 의

대출약정서에서 정의된 용어들은, 이 계약서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이 계약서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 “(본건) 렌탈료채권” 또는 “본건 양도담보대상채권”이라 함은 양도담보설정자가 렌탈료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각 체결한 별지 기재 업체와의 렌탈계약 및 장래 체결할 렌탈계약 등에 따라 해당 렌탈료 채무자로부터 지급 받게 되는 일체의 렌탈료채권을 총칭한다.

이 계약이 체결된 증거로서 당사자들은 약정서 1부를 작성하여 각자 적법한 대표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양도담보권자가 원본을, 다른 당사자가 사본 1부를 보관키로 하였다.

양도담보설정자

주식회사 페어

서울

대표이사

김

대표이사

고

양도담보권자

주식회사 링크스톤파트너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4, 5, 6, 8, 17, 19층(여의도동, 오투타워)

대표이사

권 오 형

